

제20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진행방법

□ 시정질문 진행방법

구 분	관련법규조항	내 용	비 고
본 질 문	질문 요지서 제출기한	○ 질문 요지서는 2001. 10. 16.(화) 근무시간 종료시 까지 제출	규정 없음
	질문자 결정	○ 질문 요지서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한 모든의원	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제2항
	질문의 범위	○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 되, 가능하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함. (종전과 동일)	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
	질문(요목)건수	○ 1 의원당 3건이내로 제한 (종전과 동일)	규정 없음
	질문순서결정	○ 질문순서 결정은 접수 순서대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 협의결정(종전과 동일)	규정 없음
	질문시나리오 제출기한	○ 시정질문 일의 7일전까지 제출(종전과 동일) 단, 답변서는 질문일 2일 전까지 제출(종전과 동일)	기획13130-394('97. 4. 10) 호에 의거 시정질문서 통보 기간 연장 협조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
	중복질문자 조 정	○ 해당 소관위원회 관련업무 질문자를 우선권 부여 ○ 같은 위원회에서는 질문 요지 접수 순으로 우선 권 부여	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
	질문·답변방법	○ 당일 일괄질문·일괄답 변 실시(종전과 동일)	규정 없음
	질 문 시 간	○ 1 의원당 20분 이내 (종전과 동일)	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

구 분	관련법규 조 항	내 용	비 고
보충질문	질문자 결 정	○ 본질문 의원에 한함.(종전과 동일)	규정없음
	질문·답변 방 법	○ 일괄 질문 후 정회시간 부여 후 일 괄 답변(종전과 동일)	규정없음
	발언 횟수	○ 1의원당 1회로 한함. 단, 의장이 필 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발언 할애 (종전과 동일)	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
	질문(발언) 시 간	○ 1의원당 1회 10분으로 제한. 단, 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발 언허가 할애(종전과 동일)	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
보충추가질문	질문자 결 정	○ 본질문 의원이 우선하되, 본질문 의 원의 사전양해시 타 의원 2인까지 가능(종전과 동일)	규정없음
	질문·답변 방 법	○ 의석에서 일문일답(종전과 동일)	규정없음
	발 언 의 허 가	○ 본질문 의원외 타 의원은 사전에 의장에게 질문(발언)요지 제출(종전 과 동일)	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
	발언 횟수	○ 1의원당 1회로 한함. 단, 의장이 필 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발언 할애 (종전과 동일)	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
	질문(발언) 시 간	○ 1의원당 1회 10분으로 제한. 단, 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질 문 시간 할애(종전과 동일)	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

□ 시정질문 관련법규

구 분	관련법규조항	내 용	비고
시정질문의 결 정	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	①시정질문은 가능하면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에 한하며, 중복된 내용은 상임위원장이 의 장과 사전 조정한다. ②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질문자를 결정하고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 장이 이를 결정한다.	
발 언 의 허 가	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	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 아 발언할 수 있다.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 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, 의장은 의제에 직 접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 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.	
발 언 의 장 소	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	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,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할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.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.	
발 언 의 계 속	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	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 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 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회 의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 하게 한다.	

구 분	관련법규조항	내 용	비고
의제 외 발언의 금 지	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	<p>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.</p>	
발언횟수의 제 한	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	<p>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. 다만,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,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
발언시간의 제 한	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	<p>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질의·보충발언·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②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</p>	
질문요지 제 출	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	<p>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p>	